



시 보



제1529호 2021. 12. 20.(월)

고 시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----- 2

공 고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----- 4
-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----- 27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고시 제 2021-218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20일

목 포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 목록

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붙임 참조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313)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〈 불 입 〉

연번	폐지하는 도로명주소	폐지 고시일	폐지 사유
1	전라남도 목포시 잔등로7번길 6	2021. 12. 20.	건물 멸실
2	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6번길 2	2021. 12. 20.	건물 멸실
3	전라남도 목포시 돌산길4번길 3	2021. 12. 20.	건물 멸실
4	전라남도 목포시 북향로14번길 12	2021. 12. 20.	건물 멸실
5	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94	2021. 12. 20.	건물 멸실
6	전라남도 목포시 쏠나루길 48	2021. 12. 20.	건물 멸실
7	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56번길 5-1	2021. 12. 20.	건물 멸실
8	전라남도 목포시 남해로 35-1	2021. 12. 20.	건물 멸실
9	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 171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0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40번길 4-2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1	전라남도 목포시 평화로43번길 5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2	전라남도 목포시 변화로 8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3	전라남도 목포시 동목포길 45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4	전라남도 목포시 유달로56번길 6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5	전라남도 목포시 달성길 84-8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6	전라남도 목포시 삼학로 210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7	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2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8	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43번길 4-8	2021. 12. 20.	건물 멸실
19	전라남도 목포시 양을로143번길 4-10	2021. 12. 20.	건물 멸실
20	전라남도 목포시 동부로22번길 8-1	2021. 12. 20.	건물 멸실
21	전라남도 목포시 삼일로 52-3	2021. 12. 20.	건물 멸실
22	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137번길 10	2021. 12. 20.	건물 멸실
23	전라남도 목포시 석현로25번길 20	2021. 12. 20.	건물 멸실

목포시 공고 제2021- 2062호

입 법 예 고

『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』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2. 20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의회인사권 독립지원 및 시정현안 추진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정하고
- 직급별·직렬별 불균형 해소, 정·현원 불부합 조정, 불합리한 복수직렬 조정 등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 동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2

가.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내역

구 분	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사업소	동
현 행	1,348	595	23	104	310	316
개 정	1,367	605	29	104	313	316
증 감	⊕19	⊕10	⊕6		⊕3	

나. 직종별 정원 조정내역

구 분	계	정무직	일반직	연구직	지도직
개 정	1,348	1	1,327	17	3
개 정	1,367	1	1,346	17	3
증 감	⊕19	-	⊕19	-	-

다.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

《일 반 직》

구 분	계	3·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현 행	1,327	10	69	256	322	353	317
개 정	1,346	10	69	263	320	346	338
증 감	⊕19	-	-	⊕7	△2	△5	⊕19

※ 정무직(1), 연구직(17), 지도직(3)은 변동없음

3. 개정 규칙안 : 별첨**4. 신·구조문 대조표 : 별첨****5. 규제심사(심의) 대상여부 검토 : 해당없음****6.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개선사항없음****7. 예산 수반사항**

구 분	증감인원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계	19	19	95,277,392	839,539,420	
7급	5	5	55,254,452	276,272,260	5호봉
9급	14	14	40,022,940	560,321,160	1호봉

8. 입법예고 : 2021. 12. 20. ~ 12. 26.(7일간)

-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적은 행정조직내 부 인력 조정 사항이며,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 축소

9. 의견제출

-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.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※ 보내실 곳 : [우58613]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(자치행정과)

10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061-270-3439, FAX 270-870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비용소요 추계서 (1)

1. 관련 법규명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-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기 구 : 변동 없음
-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

구 분	증감인원	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계	9급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증원	14	14	14	40,022,940	560,321,160	1호봉

3. 비용 소요 내역

(9급 1호봉 기준)

구 분	소요비용(원)	산 출 근 거	비고
총 계	40,022,940		
○ 인건비	28,802,610		
- 기본급	19,914,000	1,659,500원*12월	
- 수당	8,888,610		
• 정액급식비	1,680,000	140,000원*12월	
• 명절휴가비	1,991,400	1,659,500원*60%*2회	
• 연가보상비	951,450	1,659,500원*86%*1/30*20일	
• 시간외수당	4,265,760	8,887원*40시간*12월	
○ 직급보조비	1,740,000	145,000원*12월	
○ 이전경비	9,480,330		
- 성과상여금	2,451,680	2,228,800원*110%	
- 연금부담금 등	5,734,01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17.3788%	
- 국민건강보험금	1,153,15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3.495%	
- 장기요양보험금	141,490	(건강보험금*12.27%)	

비용소요 추계서 (2)

1. 관련 법규명
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-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
-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

2.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

- 기 구 : 변동 없음
- 정원 및 비용 증감내역

구 분	증감인원		소요비용 내역 (원)			비고
	계	7급	인원	1인당 보수액	총 금액	
증원	5	5	5	55,254,452	276,272,260	5호봉

3. 비용 소요 내역

(7급 5호봉 기준)

구 분	소요비용(원)	산 출 근 거	비고
총 계	55,254,452		
○ 인건비	40,533,812		
- 기본급	29,739,600	2,478,300원*12월	
- 수당	10,794,212		
• 정액급식비	1,680,000	140,000원*12월	
• 명절휴가비	2,973,960	2,478,300원*60%*2회	
• 연가보상비	1,420,892	2,478,300원*86%*1/30*20일	
• 시간외수당	4,719,360	9,832원*40시간*12월	
○ 직급보조비	1,860,000	155,000원*12월	
○ 이전경비	12,860,640		
- 성과상여금	3,506,360	3,187,600원*110%	
- 연금부담금 등	7,631,28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17.3788%	
- 국민건강보험금	1,534,700	(인건비+직급보조비+성과상여금)*3.495%	
- 장기요양보험금	188,300	(건강보험금*12.27%)	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및 [별표 2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개 정 >

[별표 1]

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(제2조 관련)

직급별		기관별					
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
총 계		<u>1,367</u>	<u>605</u>	<u>29</u>	<u>104</u>	<u>313</u>	<u>316</u>
정무직	계	1	1				
	시장	1	1				
일반직	계	<u>1,346</u>	<u>598</u>	<u>29</u>	<u>104</u>	<u>299</u>	<u>316</u>
	3급	1	1				
	4급	9	5	1	1	2	
	5급	69	26	3	3	14	23
	6급	<u>263</u>	<u>133</u>	<u>5</u>	<u>14</u>	<u>64</u>	<u>47</u>
	7급	<u>320</u>	<u>166</u>	<u>12</u>	<u>16</u>	<u>75</u>	<u>51</u>
	8급	<u>346</u>	<u>128</u>	<u>7</u>	<u>55</u>	<u>75</u>	<u>81</u>
	9급	<u>338</u>	<u>139</u>	<u>1</u>	<u>15</u>	<u>69</u>	<u>114</u>
연구직	계	17	4			13	
	연구관						
	연구사	17	4			13	
지도직	계	3	2			1	
	지도관						
	지도사	3	2			1	

< 개 정 >

[별표 1]

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(제2조 관련)

직급별		기관별					
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
총 계		<u>1,367</u>	<u>605</u>	<u>29</u>	<u>104</u>	<u>313</u>	<u>316</u>
정무직	계	1	1				
	시장	1	1				
일반직	계	<u>1,346</u>	<u>598</u>	<u>29</u>	<u>104</u>	<u>299</u>	<u>316</u>
	3급	1	1				
	4급	9	5	1	1	2	
	5급	69	26	3	3	14	23
	6급	<u>263</u>	<u>133</u>	<u>5</u>	<u>14</u>	<u>64</u>	<u>47</u>
	7급	<u>320</u>	<u>166</u>	<u>12</u>	<u>16</u>	<u>75</u>	<u>51</u>
	8급	<u>346</u>	<u>128</u>	<u>7</u>	<u>55</u>	<u>75</u>	<u>81</u>
	9급	<u>338</u>	<u>139</u>	<u>1</u>	<u>15</u>	<u>69</u>	<u>114</u>
연구직	계	17	4			13	
	연구관						
	연구사	17	4			13	
지도직	계	3	2			1	
	지도관						
	지도사	3	2			1	

< 개 정 >

[별표 2]

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

직종별	직급	기관별 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총계			1,367	605	29	104	313	316
정무직		합 계	1	1				
		시 장	1	1				
일반직		일반직 합계	1,346	598	29	104	299	316
	3급	소계	1	1				
		행정	1	1				
	4급	소계	9	5	1	1	2	
		행정	3	3				
		기술	1			1		
		행정+기술	5	2	1		2	
	5급	소계	69	26	3	3	14	23
		행 정	14	7	1			6
		시 설	1	1				
		행정+사회복지	3	1				2
		행정+해양수산	1					1
		행정+공업	1				1	
		행정+보건	1					1
		행정+보건+환경	1				1	
		행정+시설	16	9	1		4	2
		행정+학예연구관	1				1	
		행정+사회복지+공업+해양수산	1					1
		행정+사회복지+보건	2	2				
		행정+사회복지+보건+간호	1					1
		행정+사회복지+간호	2					2
		행정+사회복지+시설	4					4
		행정+방송통신	1	1				
		행정+공업+시설	4	2			2	
		행정+공업+농업+간호	1					1
		행정+시설+해양수산	2	2				
		행정+환경+시설	1					1
		행정+사회복지+시설+공업	1					1
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		공업+보건+환경	1				1	
		공업+환경+시설	1				1	
		행정+공업+농업+농촌지도관	1	1				
		행정+공업+녹지+시설	1				1	
		행정+농업+해양수산+환경	1		1			
		행정+공업+환경+시설	2				2	
		행정+보건+약무+간호	1			1		
		보건+의무+약무+간호	1			1		

직종별	직급	기관별 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
일반직	6급	소계	263	133	5	14	64	47
		행 정	62	32	4		4	22
		세 무	7	7				
		사회복지	9	4				5
		방 호	1				1	
		공 업	3	1			2	
		해양수산	2	2				
		보 건	1			1		
		시 설	3	1			2	
		행정+세무	5	3			1	1
		행정+사회복지	23	11				12
		행정+전산	9	8	1			
		행정+농업+녹지	1				1	
		행정+환경	5				5	
		행정+해양수산	2	2				
		행정+보건	3			3		
		행정+공업	7	4			3	
		행정+시설	48	28			20	
		행정+학예연구사	2				2	
		행정+농촌지도사	1					1
		공업+환경	2				2	
		공업+시설	3				3	
		공업+환경연구사	1				1	
		보건+식품위생	1			1		
		보건+약무	1			1		
		보건+간호	6			3		3
		행정+세무+시설	1	1				
		행정+전산+사회복지	2					2
		행정+사회복지+수의	1					1
		행정+사회복지+시설	1	1				
		행정+전산+시설	5	5				
		행정+전산+방송통신	2	2				
		행정+공업+시설	7	6			1	
		행정+공업+학예연구사	1	1				
		행정+녹지+시설	3				3	
		행정+해양수산+시설	3	3				
		행정+보건+식품위생	1			1		
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		행정+보건+환경	1				1	
		행정+환경+시설	1				1	
		행정+시설+학예연구사	1	1				
		행정+시설+녹지+농촌지도사	1				1	
		공업+보건+환경연구사	1				1	
		보건+의료기술+간호	1			1		
		의료기술+약무+간호	1			1		
		보건+의료기술+약무	1			1		
		행정+공업+시설+방송통신	1				1	
		행정+농업+환경+농촌지도사	1	1				
		행정+농업+수의+농촌지도사	2	2				
		공업+수의+환경+환경연구사	1				1	
		운 전	4	3			1	

직종별	직급	기관별	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
		직렬별							
			토목운영	1				1	
			건축운영	1	1				
			통신운영	1	1				
			전기운영	2				2	
			기계운영	1				1	
			전기운영+기계운영	1				1	
			사무운영	3	2			1	
일반직	7급		소계	320	166	12	16	75	51
			행 정	113	55	11		17	30
			세 무	22	21			1	
			사회복지	35	17				18
			전 산	6	4	1		1	
			방 호	1				1	
			공 업	25	11			14	
			농 업	2	2				
			녹 지	3				3	
			해양수산	5	5				
			보 건	1	1				
			의료기술	0			-		
			간 호	6			6		
			환 경	5				5	
			시 설	27	19			8	
			방송통신	3	3				
			행정+세무	3	3				
			행정+사회복지	6	3				3
			행정+전산	3	3				
			행정+공업	3	3				
			행정+농업	1	1				
			행정+녹지	1				1	
	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			행정+환경	4	1			3	
			행정+시설	3	2			1	
			행정+학예연구사	1	0			1	
			전산+방송통신	2	2				
			공업+시설	1				1	
			공업+환경	1				1	
			보건+식품위생	4			4		
			보건+약무+간호	1			1		
			보건+간호	4	-		4		
			의료기술+간호	1			1		
			행정+공업+시설	1	1				
			사회복지+보건+간호	1	1				
			운 전	14	6	-		8	
			위 생	2	1			1	
			토목운영	0				0	
			건축운영	1				1	
			전기운영	3				3	
			기계운영	3				3	
			열관리운영	1				1	
			사무운영	0					

직종별	직급	기관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		직렬별						
일반직	8급	소계	346	128	7	55	75	81
		행 정	95	46	2		17	30
		세 무	11	9			2	
		사회복지	53	16				37
		속 기	3		3			
		전 산	2	2	-			
		공 업	21	5		1	15	
		농 업	1	1				
		녹 지	4				4	
		해양수산	4	4				
		보 건	5			5		
		식품위생	1			1		
		의료기술	6			6		
		간 호	34			34		
		환 경	3				3	
		시 설	29	18			11	
		방송통신	4	2	1		1	
		행정+사회복지+전산	1	1				
		행정+사회복지	13					13
		행정+세무	2	2				
		행정+전산	0				-	
		행정+농업	1	1				
		행정+공업	1	1				
		행정+보건	2	1		1		
		행정+환경	1	1				
		행정+시설	6	5			1	
		행정+방재안전	0					
		전산+방송통신	1	1				
		공업+환경	3				3	
		공업+시설	1				1	
		보건+식품위생	2			2		
		보건+간호	3	1		2		
		의료기술+간호	2			2		
		시설+방재안전	0					
		행정+해양수산+시설	1	1				
		전산+방송통신+시설	1	1				
		사회복지+간호	1			1		
		방 호	0	-				
		운 전	15	7	1		7	
		위 생	0	0				
		건축운영	1	1				
		통신운영	1				1	
		전기운영	4	1			3	
		기계운영	4	0			4	
		열관리운영	0					
		화공운영	1				1	
		사무운영	2		-		1	1

직종별	직급	기관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		직렬별						
일반직	9급	소계	338	139	1	15	69	114
		행 정	95	45			6	44
		세 무	4	4				
		전 산	5	5				
		사회복지	90	24		3		63
		사 서	6	6				
		공 업	24	8			16	
		농 업	2	2				
		녹 지	7				7	
		해양수산	4	4				
		보 건	6			6		
		식품위생	1			1		
		환 경	4				4	
		시 설	24	19			5	
		방송통신	2	1			1	
		행정+사회복지	7					7
		행정+전산	2	2				
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		행정+보건	1	1				
		행정+환경	2				2	
		행정+시설	5	3			2	
		행정+방재안전	1	1				
		시설+방재안전	1	1				
		보건+의료기술	2			2		
		방 호	1	1				
		운 전	21	5	1	3	12	
		시설관리	2	1			1	
		건축운영	1				1	
		전화상담운영	2	2				
		전기운영	2				2	
		기계운영	9	1			8	
		화공운영	1				1	
		사무운영	3	2			1	-
연구직		연구사합계	17	4			13	
		학예연구사	11	3			8	
		환경연구사	5				5	
		기록연구사	1	1				
지도직		지도사합계	3	2			1	
		농촌지도사	3	2			1	

신·구조문 대비표(별표1)

현행								개정안							
〔별표1〕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	〔별표1〕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
기관별 직급별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별		계	본청	의회	직속	사업소	동
총 계		1,348	595	23	104	310	316	총 계		1,367	605	29	104	313	316
정무직	계	1	1					정무직	계	1	1				
	시장	1	1						시장	1	1				
일반직	계	1,327	588	23	104	296	316	일반직	계	1,346	598	29	104	299	316
	3급	1	1						3급	1	1				
	4급	9	5	1	1	2			4급	9	5	1	1	2	
	5급	69	26	3	3	14	23		5급	69	26	3	3	14	23
	6급	256	127	4	14	64	47		6급	263	133	5	14	64	47
	7급	322	170	7	17	77	51		7급	320	166	12	16	75	51
	8급	351	127	8	56	79	81		8급	346	128	7	55	75	81
	9급	319	132	0	13	60	114		9급	338	139	1	15	69	114
연구직	계	17	4			13		연구직	계	17	4			13	
	연구관								연구관						
	연구사	17	4			13			연구사	17	4			13	
지도직	계	3	2			1		지도직	계	3	2			1	
	지도관								지도관						
	지도사	3	2			1			지도사	3	2			1	

신·구조문 대비표(별표2)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〔별표2〕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	〔별표2〕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(제2조 관련)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총계	1,348	595	23	104	310	316	총계	1,367	605	29	104	313	316
정무직 계	1	1					정무직 계	1	1				
시 장	1	1					시 장	1	1				
일반직 계	1,327	588	23	104	296	316	일반직 계	1,346	598	29	104	299	316
3급 소계	1	1					3급 소계	1	1				
행 정	1	1					행 정	1	1				
4급 소계	9	5	1	1	2		4급 소계	9	5	1	1	2	
행 정	3	3					행 정	3	3				
기 술	1			1			기 술	1			1		
행정+기술	5	2	1		2		행정+기술	5	2	1		2	
5급 소계	69	26	3	3	14	23	5급 소계	69	26	3	3	14	23
행 정	15	7	1			7	행 정	14	7	1			6
시 설	1	1					시 설	1	1				
행정+사회복지	3	1				2	행정+사회복지	3	1				2
행정+해양수산	1					1	행정+해양수산	1					1
행정+공업	1				1		행정+공업	1				1	
행정+보건	1					1	행정+보건	1					1
행정+보건+환경	1				1		행정+보건+환경	1				1	
행정+시설	16	9	1		4	2	행정+시설	16	9	1		4	2
행정+학예연구관	1	0			1		행정+학예연구관	1	0			1	
행정+사회복지+공업+해양수산	1					1	행정+사회복지+공업+해양수산	1					1
행정+사회복지+보건	2	2					행정+사회복지+보건	2	2				
행정+사회복지+간호	2					2	행정+사회복지+간호	1					1
행정+사회복지+시설	4					4	행정+사회복지+간호	2					2
행정+방송통신	1	1					행정+사회복지+시설	4					4
행정+공업+시설	4	2			2		행정+방송통신	1	1				
행정+공업+농업+녹지	1					1	행정+공업+시설	4	2			2	
행정+시설+해양수산	2	2					행정+공업+농업+간호	1					1
행정+환경+시설	1					1	행정+시설+해양수산	2	2				
행정+사회복지+농업+해양수산	1					1	행정+환경+시설	1					1
행정+보건+간호	1			1			행정+사회복지+시설+공업	1					1
공업+보건+환경	1				1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공업+환경+시설	1				1		공업+보건+환경	1				1	
행정+공업+농업+농촌지도관	1	1					공업+환경+시설	1				1	
							행정+공업+농업+농촌지도관	1	1				

현							개						
행							정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
행정+공업+녹지+시설	1				1		행정+공업+녹지+시설	1				1	
행정+농업+해양수산+환경	1		1				행정+농업+해양수산+환경	1		1			
행정+공업+환경+시설	2				2		행정+공업+환경+시설	2				2	
행정+보건+약무+간호	1			1			행정+보건+약무+간호	1			1		
보건+임무+약무+간호							보건+임무+약무+간호	1			1		
6급 소계	256	127	4	14	64	47	6급 소계	263	133	5	14	64	47
행 정	60	31	3		4	22	행 정	62	32	4		4	22
세 무	7	7					세 무	7	7				
사회복지	8	3				5	사회복지	9	4				5
방 호	1	0			1		방 호	1	-			1	
공 업	2				2		공 업	3	1			2	
해양수산	2	2					해양수산	2	2				
보 건	1			1			보 건	1			1		
시 설	3	1			2		시 설	3	1			2	
행정+세무	5	3			1	1	행정+세무	5	3			1	1
행정+사회복지	23	11				12	행정+사회복지	23	11				12
행정+전산	8	7	1				행정+전산	9	8	1			
행정+농업+녹지	1				1		행정+농업+녹지	1				1	
행정+환경	5				5		행정+환경	5				5	
행정+해양수산	2	2					행정+해양수산	2	2				
행정+보건	3			3			행정+보건	3			3		
행정+공업	7	4			3		행정+공업	7	4			3	
행정+시설	47	27			20		행정+시설	48	28			20	
행정+학예연구소	1	1					행정+학예연구소	2				2	
행정+농촌지도사	1				1		행정+농촌지도사	1					1
공업+환경	1				1		공업+환경	2				2	
공업+시설	1			1			공업+시설	3				3	
공업+환경연구소	1			1			공업+환경연구소	1				1	
보건+식품위생	1			1			보건+식품위생	1			1		
보건+약무	1				1		보건+약무	1			1		
보건+간호	1	1					보건+간호	6			3		3
행정+세무+시설	2	2					행정+세무+시설	1	1				
행정+전산+사회복지	2					2	행정+전산+사회복지	2					2
행정+사회복지+수의	1					1	행정+사회복지+수의	1					1
행정+사회복지+시설	1	1					행정+사회복지+시설	1	1				
행정+전산+시설	5	5					행정+전산+시설	5	5				
행정+전산+방송통신	2	2					행정+전산+방송통신	2	2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
행정+공업+시설	7	6			1		행정+공업+시설	7	6			1	
행정+공업+학예 연구소	1	1					행정+공업+학예 연구소	1	1				
행정+녹지+시설	3				3		행정+녹지+시설	3				3	
행정+해양수산+ 시설	3	3					행정+해양수산+ 시설	3	3				
행정+보건+식품 위생	1			1			행정+보건+식품 위생	1			1		
행정+보건+간호	1			1			행정+보건+간호	1			1		
행정+보건+환경	1				1		행정+보건+환경	1				1	
행정+환경+시설	1				1		행정+환경+시설	1				1	
행정+시설+학예 연구소	1	1					행정+시설+학예 연구소	1	1				
행정+시설+녹지+ 농촌지도사	1				1		행정+시설+녹지+ 농촌지도사	1				1	
공업+보건+환경 연구소	1				1		공업+보건+환경 연구소	1				1	
보건+의료기술+ 간호	1			1			보건+의료기술+ 간호	1			1		
의료기술+약무+ 간호	1			1			의료기술+약무+ 간호	1			1		
보건+의료기술+ 약무	1			1			보건+의료기술+약무	1			1		
행정+공업+시설+ 방송통신	1				1		행정+공업+시설+ 방송통신	1				1	
행정+농업+환경+ 농촌지도사	1	1					행정+농업+환경+ 농촌지도사	1	1				
행정+농업+수의+ 농촌지도사	2	2					행정+농업+수의+ 농촌지도사	2	2				
공업+수의+환경+ 환경연구소	1				1		공업+수의+환경+ 환경연구소	1				1	
운 전	4	3			1		운 전	4	3			1	
토목운영	1				1		토목운영	1				1	
건축운영	1	1					건축운영	1	1				
통신운영	1	1					통신운영	1	1				
전기운영	2				2		전기운영	2				2	
기계운영	1				1		기계운영	1				1	
전기운영+ 기계운영	1				1		전기운영 기계운영	1				1	
사무운영	2	1			1		사무운영	3	2			1	

현							개						
행							정						
안							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등
7급 소계	322	170	7	17	77	51	7급 소계	320	166	12	16	75	51
행 정	111	57	6		18	30	행 정	113	55	11		17	30
세 무	22	21			1		세 무	22	21			1	
사회복지	35	17				18	사회복지	35	17				18
전 산	6	5			1		전 산	6	4	1		1	
방 호	1				1		방 호	1				1	
공 업	25	11			14		공 업	25	11			14	
농 업	2	2					농 업	2	2				
녹 지	3				3		녹 지	3				3	
해양수산	5	5					해양수산	5	5				
보 건	1	1					보 건	1	1				
의료기술	1			1			의료기술	0			-		
간 호	5			5			간 호	6			6		
환 경	5				5		환 경	5				5	
시 설	27	19			8		시 설	27	19			8	
방송통신	3	3					방송통신	3	3				
행정+세무	3	3					행정+세무	3	3				
행정+사회복지	6	3				3	행정+사회복지	6	3				3
행정+전산	3	3					행정+전산	3	3				
행정+공업	3	3					행정+공업	3	3				
행정+농업	1	1					행정+농업	1	1				
행정+녹지	1				1		행정+녹지	1				1	
행정+해양수산	1	1			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행정+환경	5	1			4		행정+환경	4	1			3	
행정+시설	4	3			1		행정+시설	3	2			1	
행정+학예연구소	1	0			1		행정+학예연구소	1	0			1	
전산+방송통신	2	2					전산+방송통신	2	2				
공업+시설	1				1		공업+시설	1				1	
공업+환경	1				1		공업+환경	1				1	
보건+식품위생	4			4			보건+식품위생	4			4		
보건+약무+간호	1			1			보건+약무+간호	1			1		
보건+간호	6	1		5			보건+간호	4	-		4		
의료기술+간호	1			1			의료기술+간호	1			1		
행정+공업+시설	1	1					행정+공업+시설	1	1				
사회복지+보건+간호	1	1					사회복지+보건+간호	1	1				

현							개						
행							정						
안							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운 전	14	5	1		8		운 전	14	6	-		8	
위 생	2	1			1		위 생	2	1			1	
토목운영	0				0		토목운영	0				0	
건축운영	1				1		건축운영	1				1	
전기운영	3				3		전기운영	3				3	
기계운영	3				3		기계운영	3				3	
열관리운영	1				1		열관리운영	1				1	
사무운영	0	0					사무운영	0	0				
8급 소계	351	127	8	56	79	81	8급 소계	346	128	7	55	75	81
행 정	94	46	1		17	30	행 정	95	46	<u>2</u>		17	30
세 무	11	9			2		세 무	11	9			2	
사회복지	51	14				37	사회복지	53	16				37
속 기	3		3				속 기	3		3			
전 산	2	1	1				전 산	2	2	-			
공 업	21	5		1	15		공 업	21	5		1	15	
농 업	1	1					농 업	1	1				
녹 지	5				5		녹 지	4				<u>4</u>	
해양수산	4	4					해양수산	4	4				
보 건	5			5			보 건	5			5		
식품위생	2			2			식품위생	1			<u>1</u>		
의료기술	5			5			의료기술	6			<u>6</u>		
간 호	35	1		34			간 호	34			34		
환 경	3				3		환 경	3				3	
시 설	29	18			11		시 설	29	18			11	
방송통신	4	2			2		방송통신	4	2	<u>1</u>		<u>1</u>	
행정+사회복지+ 전산	1	1					행정+사회복지+ 전산	1	1				
행정+사회복지	13					13	행정+사회복지	13					13
행정+세무	2	2					행정+세무	2	2				
행정+전산	1				1		행정+전산	0				-	
행정+농업	2	2					행정+농업	1	1				
행정+공업	1	1					행정+공업	1	1				
행정+보건	2	1		1			행정+보건	2	1		1		
행정+환경	1	1					행정+환경	1	1				
행정+시설	6	5			1		행정+시설	6	5			1	
행정+방재안전	1	1					행정+방재안전	0	-				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전산+방송통신	1	1					전산+방송통신	1	1				
공업+환경	3				3		공업+환경	3				3	
공업+시설	1				1		공업+시설	1				1	
보건+식품위생	2			2			보건+식품위생	2			2		
보건+간호	3			3			보건+간호	3	1		2		
의료기술+간호	2			2			의료기술+간호	2			2		
시설+방재안전	0	0					시설+방재안전	0	0				
행정+해양수산+시설	1	1					행정+해양수산+시설	1	1				
전산+방송통신+시설	1	1					전산+방송통신+시설	1	1				
사회복지+간호	1			1			사회복지+간호	1			1		
방 호	1	1					방 호	0	-				
운 전	15	6	1		7		운 전	15	7	1		7	
위 생	0	0					위 생	0	0				
건축운영	1	1					건축운영	1	1				
통신운영	1		1				통신운영	1				1	
전기운영	5	1			4		전기운영	4	1			3	
기계운영	5	0			5		기계운영	4	0			4	
열관리운영	0	0					열관리운영	0	0				
화공운영	1				1		화공운영	1				1	
사무운영	3		1		1	1	사무운영	2		-		1	1
9급 소계	319	132	-	13	60	114	9급 소계	338	139	1	15	69	114
행 정	91	41			6	44	행 정	95	45			6	44
세 무	4	4					세 무	4	4				
전 산	4	4					전 산	5	5				
사회복지	93	27		3		63	사회복지	90	24		3		63
사 서	6	6					사 서	6	6				
공 업	23	8			15		공 업	24	8			16	
농 업	1	1					농 업	2	2				
녹 지	3				3		녹 지	7				7	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	기관별 직급·직렬별	합계	본청	의 회 사무국	직속 기관	사업소	동
해양수산	2	2					해양수산	4	4				
보 건	6			6			보 건	6			6		
환 경	4				4		식품위생	1			<u>1</u>		
시 설	22	18			4		환 경	4				4	
방송통신	2	1			1		시 설	24	19			<u>5</u>	
행정+사회복지	5					5	방송통신	2	1			1	
행정+전산	2	2					행정+사회복지	7					<u>7</u>
행정+해양수산	1	1					행정+전산	2	2				
행정+보건	1	1					행정+해양수산	1	1				
행정+시설	4	2			2		행정+보건	1	1				
행정+방재안전	0	0					행정+환경	2				<u>2</u>	
시설+방재안전	1	1					행정+시설	5	3			2	
보건+의료기술+간호	1			1			행정+방재안전	1	1				
방 호	0	0					시설+방재안전	1	1				
운 전	21	6		3	12		보건+의료기술	2			<u>2</u>		
시설관리	2	1			1		방 호	1	1				
건축운영	1				1		운 전	21	5	<u>1</u>	3	12	
전화상담운영	2	2					시설관리	2	1			1	
전기운영	1				1		건축운영	1				1	
기계운영	9	1			8		전화상담운영	2	2				
화공운영	1				1		전기운영	2				<u>2</u>	
사무운영	6	3			1	2	기계운영	9	1			8	
연구사합계	17	4			13		화공운영	1				1	
학예연구사	11	3			8		사무운영	3	2			1	2
환경연구사	5				5		연구사합계	17	4			13	
기록연구사	1	1					학예연구사	11	3			8	
지도사합계	3	2			1		환경연구사	5				5	
농촌지도사	3	2			1		기록연구사	1	1				
							지도사합계	3	2			1	
							농촌지도사	3	2			1	

【 관계법령 발췌본 】

관 계 법 령	내 용
<p>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p>	<p>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채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8. 7. 3.></p> <p>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<p>④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6. 29.></p> <p>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

관 계 법 령	내 용
<p>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p>	<p>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3. 1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 2. 삭제 <2020. 3. 10.> 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<p>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7. 3., 2013. 12. 4.></p> <p>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(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12. 4.></p> <p>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</p> <p>⑤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목포시 공고 제 2021-2050 호

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『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12. 20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관내 아파트 신축 및 인구증가에 따라 통 분할과 하부 반 신설 등으로 주민불편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조정 대상 지역 및 조정 사유

대상 지역	조정 사유
유달동	-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과밀(348세대)
용해동	-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과밀(400세대)
상 동	-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과밀(212세대)

○ 조정 현황

구 분	현 행		조 정		증 감		조정사유
	통	반	통	반	통	반	
목포시	620	2,681	623	2,695	증3	증14	
유달동	28	108	29	114	증1	증6	- 세대수 과밀에 따른 통반 조정
용해동	39	171	40	175	증1	증4	- 세대수 과밀에 따른 통반 조정
상 동	50	210	51	214	증1	증4	- 세대수 과밀에 따른 통반 조정

3. 규칙 개정안 : 별첨

4. 신·구 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관련 법령

-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(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)
-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제2조(하부조직)
- 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(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)

6. 관계부서 의견 : 해당 없음

7. 규제심사(심의) 대상여부 검토 : 해당 없음

8. 예산사항 : 14,040천원

- 통장수당 : 3명 × 4,680,000원 = 14,040,000원 ※ 1년 기준

9. 입법예고

- 기 간 : '21. 12. 20.(월) ~ '22. 01. 10.(월)(22일간)

10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 없음

11. 의견제출
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10일까지 목포시장(자치행정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자치행정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79), 직접방문 등

12. 기타사항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(☎ 061-270-323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규칙 제 호

목포시 통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목포시 통·반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유달동 통·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

동 명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
유달동	29	1	허사로57번길 15, 상가동(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) 허사로57번길 15, 201동(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)
		2	허사로57번길 15, 202동(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)
		3	허사로57번길 15, 203동(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) 신항로 275-41 신항로276번길 6(달동M타운), 32
		4	허사로57번길 15, 204동(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)
		5	허사로57번길 15, 205동(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)
		6	허사로57번길 15, 206동(신항만뉴캐슬오션시티2차)

별표 용해동 통·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

동 명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
용해동	40	1	양을로 249, 501동 101호~2005호, 상가동(용해동, 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아파트)
		2	양을로 249, 501동 106호~2010호, 관리사무소(용해동, 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아파트)
		3	양을로 249, 502동 101호~2005호(용해동, 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아파트)
		4	양을로 249, 502동 106호~2010호(용해동, 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아파트)

별표 상동 통·반명과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.

동 명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
상동	51	1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아델리움 501동, 504동) 영산로609번길 30 (501동 앞 상가)
		2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아델리움 502동)
		3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아델리움 503동)
		4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아델리움 505동)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신·구조문 대비표〉

□ 유달동

동 명	개 정 전			개 정 후		
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
유달동		1	신설	29	1	허사로57번길 15, 상가동(신항만뉴캐슬 오션시티2차) 허사로57번길 15, 201동(신항만뉴캐슬 오션시티2차)
		2	신설		2	허사로57번길 15, 202동(신항만뉴캐슬 오션시티2차)
		3	신설		3	허사로57번길 15, 203동(신항만뉴캐슬 오션시티2차) 신항로 275-41 신항로276번길 6(달동M타운), 32
		4	신설		4	허사로57번길 15, 204동(신항만뉴캐슬 오션시티2차)
		5	신설		5	허사로57번길 15, 205동(신항만뉴캐슬 오션시티2차)
		6	신설		6	허사로57번길 15, 206동(신항만뉴캐슬 오션시티2차)

□ 용해동

동 명	개 정 전			개 정 후		
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	통명	반명	관 할 구 역
용해동		1	신설	40	1	양을로 249, 501동 101호~2005호, 상가동 (용해동,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 아파트)
		2	신설		2	양을로 249, 501동 106호~2010호, 관리사무소 (용해동,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 아파트)
		3	신설		3	양을로 249, 502동 101호~2005호 (용해동,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 아파트)
		4	신설		4	양을로 249, 502동 106호~2010호 (용해동,목포용해 포미타운5단지 아파트)

□ 상 동

동 명	개정 전			개정 후		
	통명	반명	관할구역	통명	반명	관할구역
상 동		1	신설	51	1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이텔리움 501동) 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이텔리움 504동) 영산로609번길 30 (501동앞 상가)
		2	신설		2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이텔리움 502동)
		3	신설		3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이텔리움 503동)
		4	신설		4	영산로609번길 30 (한국이텔리움 505동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목포시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